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

---

1. 항상 지방계약 관련 업무수행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심사 시,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등급별 평점 등으로 평가하나, 선금이 부채에 포함되어 업체의 선금수령 기피로 신속집행 저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3. 이에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선금을 수령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적용대상 : '23.6.30.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나. 선금대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 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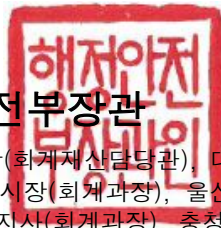
다.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라.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4. 아울러, 동 내용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산하 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조달청장, 서울특별시(재무과장), 부산광역시(회계제산담당관), 대구광역시(회계과장), 인천광역시(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회계과장), 대전광역시(회계과장), 울산광역시(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운영지원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기획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주무관 이동하 행정사무관 양현진 회계제도과장 전결 2022. 12. 27.  
김수경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10335 (2022. 12. 27.)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92 팩스번호 044-204-8967 / [hoban93@mail.go.kr](mailto:hoban93@mail.go.kr) / 대국민 공개